

# 정도경영 행동강령

(규정: Executive Summary)

감사실(Audit & Assessment Office)

## 제1장. 정의

#### 1. 목적

㈜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,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. 이에 정도경영을 경영의 원칙으로 삼고, 임직원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및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

## 2. 적용 범위

해외법인,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하여 회사 경영권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.

#### 3. 주관부서

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, 조사 수행, 결과 보고 및 제·개정 등 본 행동 강령의 전반적인 관리, 감독 업무는 JYP 감사실이 주관하며, 특히 본 행동 강령에서 해석 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감사실의 해석에 따릅니다.

#### 4. 임직원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

모든 임직원은 본 행동 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품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.

## 제2장. 구성원의 자세

## 1. 구성원 간 상호 존중

- 1)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다른 구성원을 비방하지 않습니다.
- 2) 성별, 종교, 출신 지역, 학벌, 장애 등의 이유로 다른 구성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습니다.

3) 이 외에도 회사 내 구성원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.

## 2. 성실한 업무 수행

- 1) 자신의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인식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고,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2) 업무 수행 시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예상되는 위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합니다.

#### 3. 회사 자산 및 중요 정보 보호

- 1) 회사의 유·무형 자산 및 내부 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, 업무 수행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.
- 2)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회사 자산을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분실 · 도난 · 유출에 대비합니다.
- 3) 회사와 본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,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공익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.

## 제3장. 공정한 거래와 경쟁

## 1. 이해관계자와의 관계

- 1)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행동합니다.
- 2) 본인의 직위를 남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임의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.
- 3) 다른 회사와 협력하여 업무 수행 시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합니다. 또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담합 및 기타 제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## 2. 금품 · 향응 및 접대 등 수수/제공 금지

- 1)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자와 금품 · 향응 및 접대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.
- 2) 이해관계자와 교통 · 숙박 등의 편의를 주고받지 않습니다.
- 3) 이해관계자로부터 화환 또는 금품 · 물품 등 협찬을 받는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고 반환합니다.

#### 3. 정의로운 경쟁

- 1)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(ISO 37001)을 이해하고, 국내외 부패방지법령과 사내 규정을 준수합니다.
- 2) 경쟁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치지 않으며, 실력으로 경쟁합니다.

## 제4장. 구성원과 회사의 사회적 책임

## 1.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헌

- 1)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의 사회적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합니다.
- 2) 사회의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, 회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, 그 가치를 창출합니다.
- 3) 본인의 노력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것임을 생각합니다.

## 제5장. 정도경영 행동 강령의 운영

### 1. 위반 행위 제보 및 공익신고자 보호

1) 본 행동 강령의 위반 상황에 대해 인지하는 즉시 임직원은 하기와 같은 가이드를 준수합니다.

- ① JYP 공익신고 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,
- ② 대면 또는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주관부서에 신고합니다.

2) 신고자는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.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주관부서는 감사관련 규정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규정 등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합니다.

## 부 칙

• 이 규정은 대표이사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